

알기 쉬운 심판절차 안내

특허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질 높은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허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질 높은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I. 특허심판 개요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의 거절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담당)

특허심판소송

- 특허심판 ▶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 > 특허심판원
- 특허침해소송 ▶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 등 > 일반법원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고등법원급 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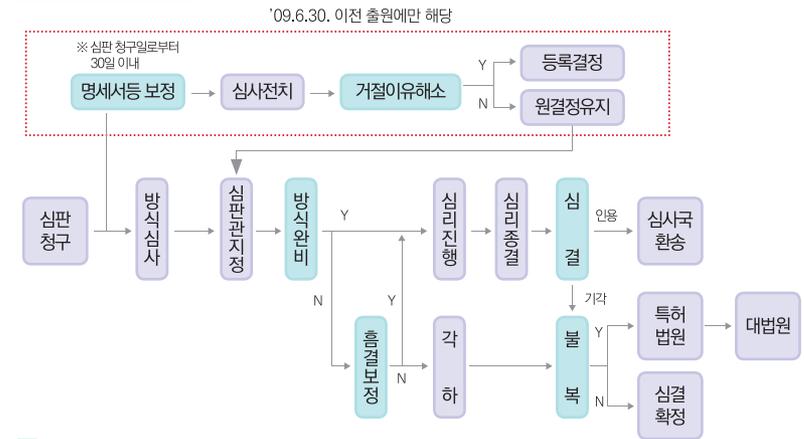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3인 또는 5인)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특허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특허심판은 **결정계 심판**(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다툼)과 **당사자계 심판**(이미 등록된 권리의 무효여부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나누어집니다.

결정계 심판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청구)	당사자계 심판 (등록된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심판 • 거절결정 불복심판 • 존속기간연장등록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 실용신안) •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상표, 디자인) • 취소결정 불복심판(실용신안, 디자인)	• 무효심판 • 정정무효심판(특허, 실용신안) •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특허, 실용신안) •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상표)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상표) •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 •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상표) • 권리범위 확인심판 • 통상실시권 허락심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권리자가 청구하는 심판 • 정정심판(특허, 실용신안)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없음 ⇒ 정정청구 가능)	

결정계 심판



심사전치제도 및 재심사청구제도는?

-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명세서 또는 도면)**를 제출하여 보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심사전치제도**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하면서 명세서등 보정서를 제출하고, **재심사청구제도**는 특허청에 거절결정 후 명세서등 보정서를 제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전치제도와 재심사청구제도 비교

(원출원일 기준)

구 분	심사전치제도	재심사청구제도
대 상	'09. 6.30. 이전 출원건	'09. 7. 1. 이후 출원건
제출기관	특허심판원	특허청
제출서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명세서등 보정서	명세서등 보정서
보정서 제출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절결정서등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 타	· 기간 내 제출된 명세서등보정서에 대해 심판에 앞서 심사관이 다시 심사 · 원결정 유지시 심판절차 진행	· 재심사청구는 취하 불가 · 재심사청구에 따라 다시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가능 (명세서등 보정서는 제출 불가)
공통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대상 · 명세서등 보정서(또는 도면 보정서) 제출	

※ '09.7.1.이후 출원건이 거절결정된 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다음 페이지 '유의사항' 참조)

II. 알기 쉬운 심판절차

▶ 심판종류에 따른 청구의 취지 작성예시

구 분	작 성 예 시
결정계	거절결정 불복심판 “원결정을 취소한다. 2017년 특허(상표등록)출원 제00호는 특허(등록)결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정정심판 “특허 제00호의 명세서(도면)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명세서(도면)와 같이 정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당사자계	권리범위 확인심판 적극적(일부) “확인대상발명 □□은 특허 제00호 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적극적(전체) “확인대상발명 □□은 특허 제00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소극적(일부) “확인대상발명 □□은 특허 제00호의 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소극적(전체) “확인대상발명 □□은 특허 제00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무효심판 일부 “특허 제00호의 청구범위 제1항, 제2항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전체 “특허 제00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상표등록 취소심판 일부 상품류의 지정상품 일부 “상표등록 제00호의 제00류 지정상품 중에서 △△, □□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일부 상품류의 지정상품 전체 “상표등록 제00호의 제00류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전체 “상표등록 제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셋.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란?

-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원인(이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률에서 이해관계인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 여부를 청구의 이유에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인 대비표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예정)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이 법원에서 침해분쟁 사건으로 계류 중인지 여부를 각각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정정 전과 후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합니다.

📖 【청구의 이유】작성시 유의사항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충한다.” 등과 같이 후일 보충할 취지의 의사만 기술된 경우, “원결정에 불복한다.”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승복할 수 없는 점이 기술되지 않은 경우, 원결정에 도달한 경과만 기술되어 있는 경우 등

▶ 청구의 이유 작성 예시 - 무효심판

1. 특허 제1234567호 경과

특허 제1234567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합니다)는 2005.4.22.자로 출원되었고, 2008.9.29.자로 특허등록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참조).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건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갑 제2호증, 3쪽 식별번호 <14> 참조).

나.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하는 것에 구성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총 2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 발명도 같은 방식으로 부릅니다).

[청구항 1] ~~~을 특징으로 하는 물건

[청구항 2] ~~~을 특징으로 하는 물건의 제조방법

3. 이해관계 소명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갑제3호증과 같이 권리자로부터 특허권 침해 중지요청을 통보 받았고, 갑제4호증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업과 동종업을 행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권 존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4. 비교대상발명들의 요지

가.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 2000-999999호(갑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1”) 비교대상발명1에는 ~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갑 제5호증, [0050]단락)

나. 일본공개특허공보 제 2001-999999호(갑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2”) 비교대상발명2에는 ~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갑 제6호증, [0060]단락)

5.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II. 알기 쉬운 심판절차

[청구항 1] ~~~을 특징으로 하는 물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1의 ~한 구성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

[청구항 2] ~~~을 특징으로 하는 물건의 제조방법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2의 ~한 구성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6. 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의 취지와 같은 심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심판종류별 청구의 이유 작성에서는 특허청 홈페이지-‘민원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넷. 심판청구서의 [증거방법]이란?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적으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절 결정 불복심판은 생략가능**하며, 법률에서 이해관계인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만약 파산/회생/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증의 경우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에 따라 서증 사본 모든 쪽의 하단에 다음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제출하는 것은 "갑",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것은 "을", 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으로 분류합니다. 외국어로 된 서증은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하며, 번역문의 증거번호는 가지번호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증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효심판의 경우, 강제1호증(등록원부), 강제2호증(등록특허공보), 강제3호증(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경고장 등), 강제4호증(비교대상발명의 일본 공개특허공보), 강제4호증의1(비교대상발명의 번역문).

※ 온라인 심판청구서 서식작성기-첨부서류 입력 화면에서 증거자료/참고자료를 구분하여 **반드시 서증번호를 함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 : 등록원부, 비교대상발명(디자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실시(사용) 입증서류, 카탈로그, 증거물 사진, 도면, 고소장, 경고장, 소장 등
- 참고 자료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판결문, 심결문, 심사기준 등

다섯. 심판 당사자 적격

● 심판 당사자 적격은?

심판을 청구/피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본안심리에 앞서 당사자 적격여부를 심리합니다.

● 특허심판과 특허취소신청의 당사자 적격

구분	청 구 인	피청구인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상표)권자
정정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권자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범위(적극) : 특허(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 권리범위(소극) : 이해관계인	· 권리범위(적극) : 특허발명(등록상표)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 · 권리범위(소극) : 특허(상표)권자
상표등록취소심판	누구든지 (※ 일부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	상표권자
정정심판	특허권자	-
특허취소신청	누구든지	-

여섯. 심판관련 수수료

● 심판청구료

구분	권리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거절·무효·정정·권리범위 등	거절·무효·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전자문서출원	기본료	매건 150,000원	1디자인마다 240,000원	매건 20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240,000원	매건 20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1항마다 15,000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면출원	기본료	매건 170,000원	1디자인마다 260,000원	매건 22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260,000원	매건 22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1항마다 15,000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II. 알기 쉬운 심판절차

● 기타 심판관련 수수료

구분	수수료
당사자 참가	전자출원(142,000원), 서면출원(150,000원)
보조 참가	전자출원(16,000원), 서면출원(18,000원)
심판청구서등 보정, 명세서등 보정, 출원서등 보정	전자출원(4,000원), 서면출원(14,000원)
정정청구	기본료 + 가산료(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기본료-전자출원: 30,000원 / 서면출원: 40,000원

📖 심판관련 수수료 유의사항

-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는 등록된 청구항 전체에 대해 수수료(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명세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명세서를 첨부하여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정청구료가 면제됩니다(다만 정정청구서에 원용하는 사건의 심판번호를 명시할 필요).

※ 심판청구료의 감면·면제사항은 다음 페이지 참조

●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료 산정기준

- 심사관이 최종 거절한 지정상품의 상품류 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서와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서를 동일일에 제출하는 경우, 남은 지정상품의 상품류 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 후 지정상품을 삭제보정하여 상품류수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정상품을 추가보정하여 추가된 상품류에 대해 보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보정시 지정상품 가산금(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이 부과됩니다.

거절결정 상품류 수	심판 청구서 상품류수	보정서에 의한 상품류수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 수	산출근거(전자문서 제출) * 서면: 서면제출
		삭제	추가		
1	1	1	-	20개 이하	- 심판청구료: 1류×240,000원(서면:1류×260,000원) = 240,000원(서면: 260,000원) - 출원서등 보정서의 수수료: 4,000원(서면 14,000원)
				25	※ 보정서에 의하여 지정상품이 추가(10→25개)되었으나, 상품류는 1개가 유지된 경우 - 심판청구료: 1류×240,000원(서면:1류×260,000원) = 240,000원(서면: 260,000원) - 출원서등 보정서의 수수료 및 지정상품가산금 : 4,000원(서면 14,000원) + (5 지정상품수×2,000원) = 14,000원(서면 24,000원)
2	3	-	1 (다른 류의 지정 상품)	-	※ 보정서에 의하여 다른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추가된 경우 - 심판청구료: 3류×240,000원(서면:3류×260,000원) = 720,000원(서면: 780,000원) - 출원서등 보정서의 수수료 및 추가류에 대한 보정료 : 4,000원(서면 14,000원) + (1류×62,000원(서면 1류×72,000원)) = 66,000원(서면: 86,000원)
				2	1 (같은 류의 지정 상품)

📖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 수수료 면제 -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
- 70% 감면 - 개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50% 감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조직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상표는 면제·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수수료 감면시 유의사항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심판청구서에 면제 또는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을 적고,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료 반환

- 심판청구료 100% 반환 - 거절결정, 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특허명세서, 상표등록출원서, 디자인도면 등을 보정한 경우는 제외)
 - 심판청구료 50% 반환 - 심리종결을 통지받기 전 심판청구/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와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이 확정 또는 당사자참가신청이 거부 결정된 경우
- ※ 특허법 개정(2016.06.30.시행),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2016.4.28.시행)

II. 알기 쉬운 심판절차

2. 정정심판/정정청구서 작성법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은?

-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 등록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가 정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무효심판(특허취소신청) 계속 중 정정청구와 정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정정청구와 정정심판 비교

구 분	특허무효심판 중 정정청구	정정심판
청구시기	· 답변서 제출기간 내 · 심판부 직권의 무효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 · 청구인의 새로운 증거제출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이 정하는 기간 내	· 설정등록 이후(단, 특허취소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는 불가능) ·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에 의하여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무효가 된 후에는 청구 불가능
정정명세서 보정기간	· 정정불인정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	·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취하시기	· 정정청구기간 · 정정청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 · 정정불인정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 ※ 정정청구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심결확정 전까지

정정청구, 정정심판 청구시 유의사항

- ☑ 보정서 형태가 아니라 **전체 정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함
- ☑ 등록 당시의 명세서(등록특허공보) 또는 기 정정이 확정된 정정명세서(정정공보)를 토대로 정정사항이 반영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모두를 제출해야 함
- ☑ 질권자, 실시권자 동의를 1통을 첨부해야 함
- ☑ 공동권리의 경우 권리자 전원이 청구해야 함

심판종류에 따른 청구의 취지 작성예시

구 분	작성예시
정정청구서	"특허 제00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정정청구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정정심판	"특허 제00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3. 기간연장신청서 작성법

법정기간연장신청은?

- 거절결정서 등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기간을 연장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기간연장신청은?

- 심판당사자(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가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지정된 답변서·의견서 등의 제출기간을 연장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기간지정신청은?

-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 특허법원에 대한 소제기기간을 1회(20일 또는 30일)에 한하여 연장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연장신청 비교

구 분	법정기간연장신청	지정기간연장신청	부가기간지정신청
대상서류	· 거절결정·취소결정·보정각각결정·준속기간 연장등록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서	·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하는 절차와 관련된 서류(심판청구보정서, 심판사건답변서, 의견제출 통지에 따른 의견서 등)	·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예정인 건 (단, 원출원일자가 '99.1.1. 이후 출원건만 해당)
제출기간	·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해당 서류의 제출기일 이내	· 소제기기간(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장가능 기간	· 청구서 제출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만,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재외자)의 경우 추가로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연장 신청시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다만,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연장가능	· 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국내에 있는 자) · 다만,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
제출기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기간연장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 ☑ 심판청구에 대한 최초 답변서 제출을 제외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 ☞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승인될 수 있음
- ☑ 아래의 서류에 대하여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연장신청서는 반려됨
 - ☞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상표/디자인/기술설명회개최통지서 등
- ☑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소제기 기간 종료일 4일 전까지는 특허심판원에 제출(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해야 함
 - ☞ 부가기간 지정신청만으로는 연장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소 제기 기간 내에서 부가 기간 지정서가 발급되어야 연장 효력이 발생함

II. 알기 쉬운 심판절차

4. 심판청구 취하서 작성법

▶ 심판청구 취하는?

- 청구인의 일방적인 청구의 철회행위로서, 취하시 그 심판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취하 후에도 동일 청구취지로 같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일부취하는?

- 심판대상 전체가 아닌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로서, 청구항, 지정상품, 공동(피)청구인 중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은 (피)청구인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정계 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과 상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청구항(지정상품)의 일부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심판청구취하서 제출시 유의사항

- 📌 취하서는 **심판청구인이 심결확정 전까지** 제출 가능함
- 📌 **대리인이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심판건의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함

📖 당사자계 심판청구취하서 제출시 유의사항

-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 취하서에 **피청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 다만,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불필요
 - ☞ **당사자참가인이 있는 당사자계 심판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 동의하에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당사자참가인이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므로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음** 따라서, 심판청구 취하에 의한 심판절차를 종료하기 위하여 당사자참가인의 동의서를 취하서에 함께 첨부하거나 당사자참가인이 심결확정 전에 심판참가취하서를 제출해야 함
 - ☞ **피청구인의 동의서 첨부시:** 취하서에 첨부되는 동의서에는 피청구인이 특허청에서 부여 받은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거나 피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를 함께 첨부해야 함 *당사자참가인의 경우도 동일함
 - ☞ **피청구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취하서는 반려됨

📖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심판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 취하서 제출시 유의사항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심판(소송)절차를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 ☞ **심판원 사건에 대한 취하서가 먼저 제출되어야 함**
 - ☞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하여 소(상고) 취하서를 선제출한 경우:** 심판원 사건이 심결확정됨 * 심판원에 취하서를 선제출하고 이후(또는 동일자로) 법원 또는 대법원에 취하서를 제출 하더라도 심판원에서 취하서가 반려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되어 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취하서는 원심판 사건이 아닌 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판사건에 제출해야 함

5.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 작성법

▶ 심판비용액 결정청구는?

- **심판비용**이란 당사자(승소자)가 현실적으로 심판에서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는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승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승소자)가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와 비용계산서**(비용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심판원장이 결정합니다.
 -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우는 특허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심판비용액의 결정 절차

-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 최고서 송달 → 최고서에 대한 의견서 → 심판비용액 결정 및 발송

📖 심판비용의 범위 및 비용액 산정 기준

-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6-17호 §8)
- 심판비용의 범위는 심판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적은 사항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변리사의 보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3호에 의한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심판(재심)의 청구료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3. 심판(재심)의 청구서 기타 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4. 출석통지에 의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
 5. 신청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시키고 실시한 현장검증에 소요된 여비
- **비용액 산정 기준**
위 각호에 규정된 비용항목의 비용액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특허청고시 제2016-17호 §9)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는 “**특허료등의징수규칙**”에 의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금액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서류 및 도면 작성료는 1면당 300원, 1면이 미달할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서류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본다.
 4.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 산정 하는 금액

II. 알기 쉬운 심판절차

6. 심결(결정)에 대한 불복

▶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대한 불복은?

-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결문(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결(결정)이 확정됩니다.

📖 특허법원에 소장제출시 유의할 사항

- 소제기 기간의 준수(우편접수시 소인일자 불인정)
- 증거서류 : 심결등본(사본), 등록원부(등록된 경우)
- 첨부서류 : 소장부분(특허실용신안 4부, 상표디자인 3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심결(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 기 타 : 인지대, 송달료 예납 등
- 제출처 : 우)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특허법원 9층 특허과) 042) 480-1463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 공익변리사의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산업재산권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익변리사가 직접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를 지원
- 지원분야
 - 지원대상자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상표 등록의 취소심판
 - 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 지원절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신청서 제출 → 담당 공익변리사 지정 → 지원여부 심사·결정 → 심판·소송 수행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TEL) 02-6006-4300, FAX) 02-553-5865, 홈페이지) <https://www.pcc.or.kr/>

7. 자주 범하는 실수 및 기타 안내

▶ 1. 심판청구서 제출 시

- (상표 공통) 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가 아닌 ‘상표’로 기재(구법에서는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로 기재 필요)
- (상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이유에는 일부 지정상품별로 청구하나, 청구의 취지에는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2016.9.1. 이후 청구부터 지정상품별 청구제도 신설)
-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제출 시 특허발명과 구체적인 대비표를 누락,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예정)여부 기재 누락
- (무효심판·권리범위 확인심판 공통) 공동권리자 중 일부 누락
- (거절결정 불복심판) 공동출원인 중 일부 누락
- (정정심판) 질권자·실시권자 동의서 미첨부, 정정 전과 정정 후에 대한 특허발명과 구체적인 대비표 누락

▶ 2. 중간서류 제출 시

- (대리인 선임신고) 특허법인인 경우 지정변리사를 미기재
- (지정기간연장) 불가피한 연장사유에 대한 소명서 미첨부(단, 최초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시는 제외)
- (정정청구) 질권자·실시권자 동의서 미첨부, 정정 전과 정정 후에 대한 특허발명과 구체적인 대비표 누락,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정정청구서 제출(반려 대상)
- (심판비용액 결정청구) 심결확정 이전에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제출(반려 대상),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할 보수에 소요금액 전액을 기재(심판청구료 범위 이내만 가능)

▶ 3. 취하서 제출 시

- 피청구인 동의서 미첨부(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이후 반드시 첨부)
- 특허청에 등록(특허고객번호 부여)한 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 시 인감증명서 미첨부
-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심판청구 취하에 대한 권한(특별수권 필요)이 없음

특허심판에 대한 문의 및 서류 제출처

II. 알기 쉬운 심판절차

4. 증거물건

- (증거물건 제출) 증거물건만 제출(증거물건과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를 함께 서면(우편)으로 제출 필요)
- (증거물건 반환) 심결확정 이전에 증거물건 반환신청서 제출(반려 대상, 심결취소소송이 있는 경우 특허법원의 문서송부촉탁 요청 시 필요하기 때문)

5. 기타 안내

- (권리자 사망) 심판절차는 중단되며, 특허법 제21조에 규정된 자가 특허심판원에 수계신청 후 심판장의 수계결정이 이뤄지면 심판절차가 진행, 수계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장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절차를 진행
- (권리 양도) 심판절차 진행 중 권리이전이 있는 경우 심판장 직권으로 심판절차속행통지가 이뤄지며 이후 양수인이 심판절차를 진행
- (권리자 주소·명칭 변경) 심판절차 진행 중 권리자의 주소, 성명(법인의 명칭)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권리자는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또는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2007년 이전에 설정등록된 권리에 한함)를 제출
- (서류 반송)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 후 재발송하며, 2~3회 이상 지속적으로 반송 시 인터넷 공시 송달,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주소보정을 요구하며, 법인이 파산상태로서 청산종결등기 이전일 때는 파산관재인에게 서류를 재발송

특허심판 안내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ipt/>

특허고객상담센터 : ☎ 1544-8080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 02-6006-4300

홈페이지 : <https://www.pcc.or.kr/>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특허로(전자출원 및 온라인 심판청구) 홈페이지 : <http://www.patent.go.kr/>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http://www.kpaa.or.kr/>

심판서류 제출처

① 특허심판원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7층 심판정책과

② 특허청 서울사무소 :

우)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5층